
해커스

전산세무 2급

이론+실기+기출문제

세법 개정자료

2016년 교재 출간 후 2017년 1월 세법 개정으로 인해 수정 및 추가되는 내용입니다.
2016년 최신판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여 학습하시길 바랍니다.

2017 개정세법 완벽반영



<해커스 전산세무 2급 이론+실기+기출문제(2016년 최신판)> 2017 세법 개정 사항

※ 본 자료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사항을 토대로, 해커스 전산세무 2급 교재에 수정 되어야할 사항을 정리한 표입니다.
 2016년 최신판 <해커스 전산세무 2급 이론+실기+기출문제>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2017년 전산세무 2급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 세법 개정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는 수정하여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

(2017.03.07. 업데이트)

1. 정기에금 이자율 조정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에금 이자율 ○ 연 1.8%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에금 이자율 ○ 연 1.6%	<개정이유> 시중 이자율 감안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480	중간	(기출확인문제) · 간주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. - 보증금: 1억원 - 이자율: 1.8% - 대상 기간 일수: 91일 - 당해 연도 총 일수: 366일 - 원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	(기출확인문제) · 간주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. - 보증금: 1억원 - 이자율: 1.6% - 대상 기간 일수: 91일 - 당해 연도 총 일수: 365일 - 원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
		(기출따라하기) ⑤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100,000,000원 × 1.8% × (91/366) = 447,540원	(기출따라하기) ⑤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100,000,000원 × 1.6% × (91/365) = 398,904원
505	하단	(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: 2016.7.1.~9.30.) · 7.1.~7.31. = 10,000,000원 × 1.8% × (31/366) = 15,245원 · 8.1.~9.30. = 20,000,000원 × 1.8% × (61/366) = 60,000원 · 소계 = 75,245원	(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: 2017.7.1.~9.30.) · 7.1.~7.31. = 10,000,000원 × 1.6% × (31/365) = 13,589원 · 8.1.~9.30. = 20,000,000원 × 1.6% × (61/365) = 53,479원 · 소계 = 67,068원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528	(1)	(문제) ~ (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1.8% 로 가정함) (해설)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40,000,000원 × 1.8% × (92/366) = 180,983원	(문제) ~ (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1.6% 로 가정함) (해설)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40,000,000원 × 1.6% × (92/365) = 161,315원
693, 748	(2)	(최신기출문제 - 제63회) ⑤ 간주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. - 보증금: 1억원 - 이자율: 1.8% - 대상 기간 일수: 91일 - 당해 연도 총 일수: 366일 - 원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 (해설) ·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100,000,000원 × 1.8% × (91/366) = 447,540원	(최신기출문제 - 제63회) ⑤ 간주임대료 관련 내역은 다음과 같다. - 보증금: 1억원 - 이자율: 1.6% - 대상 기간 일수: 91일 - 당해 연도 총 일수: 365일 - 원단위 미만은 절사할 것 (해설) ·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100,000,000원 × 1.6% × (91/365) = 398,904원
753	(1)	(최신기출문제 - 제62회) (해설) (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: 2016.7.1.~9.30.) · 7.1.~7.31. = 10,000,000원 × 1.8% × (31/366) = 15,245원 · 8.1.~9.30. = 20,000,000원 × 1.8% × (61/366) = 60,000원 · 소계 = 75,245원	(최신기출문제 - 제62회) (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: 2017.7.1.~9.30.) · 7.1.~7.31. = 10,000,000원 × 1.6% × (31/365) = 13,589원 · 8.1.~9.30. = 20,000,000원 × 1.6% × (61/365) = 53,479원 · 소계 = 67,068원
693, 771	(2)	(최신기출문제 - 제58회) ~ (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1.8% 로 가정함) (해설)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40,000,000원 × 1.8% × (92/366) = 180,983원	(최신기출문제 - 제58회) ~ (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1.6% 로 가정함) (해설) 간주임대료(과세표준) = 40,000,000원 × 1.6% × (92/365) = 161,315원

2.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의 과세표준 조정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,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	<input type="checkbox"/>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 <input type="checkbox"/> 삭제 (→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)	<개정이유> 마일리지 결제 시, 재화 공급분과 용역 공급분 간의 형평성 제고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
407	③	③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/tr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,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(*1)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*1) 용역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.</p>	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	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	~	~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,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(*1) 		③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margin-top: 10px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0%;">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</th> <th style="width: 50%;">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 (빨간색 삭제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	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	~ (빨간색 삭제)	~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
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	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, 향후 그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(*1) 															
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	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														
~ (빨간색 삭제)	~												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														

3.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완화와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순서 조정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제60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○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: 공급가액 × 1% (지연제출 : 공급가액 × 0.5%)	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○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: 공급가액 × 0.5% (지연제출 : 공급가액 × 0.3%)	<개정이유>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세 부담 경감
부가가치세법 제60조	<input type="checkbox"/>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 적용 시 중복 적용 배제 ○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(1%, 0.5%)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 (1%, 0.5%) 적용 시 중복적용 배제 ○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(0.5%, 0.3%)	<개정이유> 가산세율 변동을 감안하여 배제순서 보완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		수정 후		
		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	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
428	④ 표	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[65] [66]	· 미제출 : ~ · 부실기재 : ~ · 지연제출 : ~	공급가액 × 1% 공급가액 × 0.5%	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[65] [66]	· 미제출 : ~ · 부실기재 : ~ · 지연제출 : ~	공급가액 × 0.5% 공급가액 × 0.3%
	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[65]	~	공급가액 × 1%	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[65]	~	공급가액 × 0.5%	
	④ 참고	(참고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·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~ 매출·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·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하였으나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.			(참고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면제 ·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~ 매출·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(빨간색 삭제)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
429	(2)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우선 적용되는 가산세</th> <th>적용 배제되는 가산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</td> <td>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</td> </tr> <tr> <td>~</td> <td>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 ·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)</td> </tr> <tr> <td>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(1%)</td> <td>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</td> </tr> <tr> <td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·부실기재·지연제출 가산세 (1%, 0.5%)</td> <td>·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(1%) 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 (1%, 0.5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우선 적용되는 가산세	적용 배제되는 가산세	~	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	~	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 ·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)	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(1%)	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	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·부실기재·지연제출 가산세 (1%, 0.5%)	·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(1%) 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 (1%, 0.5%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우선 적용되는 가산세</th> <th>적용 배제되는 가산세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</td> <td>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</td> </tr> <tr> <td>~</td> <td>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)</td> </tr> <tr> <td>·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(1%) ·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(1%) 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 (1%, 0.5%)</td> <td>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기출포인트) 세금계산서가 미발급·지연발급되면,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가 미전송·지연전송되고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·지연제출된다. 이와 관련된 가산세의 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다. · (1순위) 세금계산서 미발급·지연발급 가산세 (2%, 1%) · (2순위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 (1%, 0.5%) · (3순위)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</p>	우선 적용되는 가산세	적용 배제되는 가산세	~	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	~	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)	·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(1%) ·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(1%) 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 (1%, 0.5%)	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
우선 적용되는 가산세	적용 배제되는 가산세																				
~	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																				
~	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 ·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)																				
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(1%)	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1%, 0.5%)																				
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·부실기재·지연제출 가산세 (1%, 0.5%)	·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(1%) 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 (1%, 0.5%)																				
우선 적용되는 가산세	적용 배제되는 가산세																				
~	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																				
~	~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 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)																				
·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(1%) ·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(1%) ·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·지연전송 가산세 (1%, 0.5%)	·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(0.5%, 0.3%)																				
430	(3) ③	· 감면대상 :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(1%),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(1%)	· 감면대상 :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(0.5%),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(1%)																		
486	표	<p>(더 알아보기 1) 매출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형태별 가산세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</th> <th>당초 신고한 예정·확정 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</td> <td>~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</td> <td>(지연제출) 공급가액 × 0.5%</td> <td>(미제출) 공급가액 × 1% × 감면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	당초 신고한 예정·확정 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	~	~	~	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	(지연제출) 공급가액 × 0.5%	(미제출) 공급가액 × 1% × 감면 가능	<p>(더 알아보기 1) 매출누락분에 대한 수정신고 형태별 가산세 (정상발급·정상전송 가정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</th> <th>당초 신고한 예정·확정 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</td> <td>~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(빨간색 삭제)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	당초 신고한 예정·확정 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	~	~	~	(빨간색 삭제)		
구분	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	당초 신고한 예정·확정 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
~	~	~																			
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	(지연제출) 공급가액 × 0.5%	(미제출) 공급가액 × 1% × 감면 가능																			
구분	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경우	당초 신고한 예정·확정 신고서를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																			
~	~	~																			
(빨간색 삭제)	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487	Case3 풀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= 10,000,000원 × 0.5% = 50,000 •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는 없음 (*1) (*1)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= 10,000,000원 × 1% = 100,000원 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없음 (*1) (*1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
488	Case3 풀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= 10,000,000원 × 1% × 50% 감면 = 50,000 •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는 없음 (*2) (*1) 법정 제출기한(2017년 1월 25일)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이므로 50% 감면된다. (*2)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= 10,000,000원 × 1% = 100,000원 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 (*1) (*1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
525	03 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= 3,000,000원 × 0.5% = 15,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 ▶ 지연제출 [66] : 3,000,000 / 15,000 •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: 없음(*2) (*1) ~ (*2)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= 3,000,000원 × 1% = 30,000원 전자세금발급명세 ▶ 미전송 [64] : 3,000,000 / 30,000 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는 없음(*2) (*1) ~ (*2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
536	07 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(*3)=5,000,000원×1%×50%감면(*4)=25,000원 세금계산서합계표 ▶ 제출불성실 [65] : 5,000,000 / 25,000 •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: 없음(*5) ~ (*3) 재화·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~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. (*4) 법정 제출기한(2017년 1월 25일)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이므로 50% 감면한다. (*5)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(*3) = 5,000,000원 × 1% = 50,000원 전자세금발급명세 ▶ 미전송 [64] : 5,000,000 / 50,000 •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는 없음(*4) ~ (*3)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1일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된다. (*4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
763	3-(2) 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산세명세 -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[66] : 3,000,000 / 15,000 (*1) ~ (*1) 3,000,000원 × 0.5% = 15,000원 ~ (참고)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산세명세 -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 [64] : 3,000,000 / 30,000 (*1) ~ (*1) 3,000,000원 × 1% = 30,000원 ~ (참고)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배제된다.

4. 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미발급 적용범위 조정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완화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제60조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미발급 가산세 ○ (지연발급) 공급가액의 1% :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○ (미발급) 공급가액의 2% :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지연발급·미발급 가산세 ○ (지연발급) 공급가액의 1% :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○ (미발급) 공급가액의 2% :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	<개정이유> 납세편의 제고
부가가치세법 제60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○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: 공급가액 × 1%	<input type="checkbox"/>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○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: 공급가액 × 0.5%	<개정이유>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세부담 경감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		수정 후		
		구분	해당 과세기간 내 발급	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	구분	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	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발급
412	상단 표	공급자	· 공급가액의 1%(지연발급 가산세)	· 공급가액의 2%(미발급 가산세)	공급자	· 공급가액의 1%(지연발급 가산세)	· 공급가액의 2%(미발급 가산세)
		공급받는 자	· 매입세액 공제 가능 · 공급가액의 1% (지연수취 가산세)	· 매입세액 불공제(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봄) (참고) 기준시점 :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	공급받는 자	· 매입세액 공제 가능 · 공급가액의 0.5% (지연수취 가산세)	· 매입세액 불공제(세금계산서 미수취로 봄)
427	㉔ 표	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	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
		지연발급 등 [60]	· 지연발급 :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기한 이후이면서 해당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 에 발급한 경우	공급가액 × 1%	지연발급 등 [60]	· 지연발급 :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기한 이후이면서 해당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한 경우	공급가액 × 1%
		지연수취 [61]	· 지연수취 :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기한 이후이면서 해당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 에 발급받은 경우	공급가액 × 1%	지연수취 [61]	· 지연수취 : 세금계산서를 법정 발급기한 이후이면서 해당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받은 경우	공급가액 × 0.5%
미발급 등 [62]	· 미발급 :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	공급가액 × 2%	미발급 등 [62]	· 미발급 : 재화·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	공급가액 × 2%		

5. 개인사업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가산세 경감 적용 종료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제60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불성실 가산세 ○ (지연전송) 공급가액의 0.5%. 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 0.1% ○ (미전송) 공급가액의 1%. 단, 개인사업자의 경우 0.3%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불성실 가산세 ○ (지연전송) 공급가액의 0.5%(빨간색 삭제) ○ (미전송) 공급가액의 1%(빨간색 삭제)	<개정이유>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초기 한시적 제도인 점을 감안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		수정 후		
		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	구분	내용	가산세 금액
428	③ 표	지연전송 [63]	~	공급가액 × 0.5% (개인인 0.1%)	지연전송 [63]	~	공급가액 × 0.5% (빨간색 삭제)
		미전송 [64]	~	공급가액 × 1% (개인인 0.3%)	미전송 [64]	~	공급가액 × 1% (빨간색 삭제)

6.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부가가치세법 제59조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적용 사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감가상각자산을 신설·취득·증축하는 사업자	<input type="checkbox"/>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세율 적용 사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감가상각자산을 신설·취득·증축하는 사업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	<개정이유>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의 조속한 정상화 유도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424	(2) ①	① 조기환급대상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때 · 사업설비(감가상각자산)를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</div>	① 조기환급대상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는 때 · 사업설비(감가상각자산)를 신설, 취득,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·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등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때 </div>

7.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세법 제55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세율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600 ~ 8,800만원</td> <td>24%</td> </tr> <tr> <td>8,800 ~ 1억5천만원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1억5천만원 초과</td> <td>38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1,200만원 이하	6%	1,200 ~ 4,600만원	15%	4,600 ~ 8,800만원	24%	8,800 ~ 1억5천만원	35%	1억5천만원 초과	38%	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세율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6%</td> </tr> <tr> <td>1,200 ~ 4,600만원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4,600 ~ 8,800만원</td> <td>24%</td> </tr> <tr> <td>8,800 ~ 1억5천만원</td> <td>35%</td> </tr> <tr> <td>1억5천만원 ~ 5억원</td> <td>38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4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세율	1,200만원 이하	6%	1,200 ~ 4,600만원	15%	4,600 ~ 8,800만원	24%	8,800 ~ 1억5천만원	35%	1억5천만원 ~ 5억원	38%	5억원 초과	40%	<개정이유>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원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 ~ 8,800만원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 ~ 1억5천만원	3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5천만원 초과	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세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,200 ~ 4,600만원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,600 ~ 8,800만원	2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,800 ~ 1억5천만원	3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억5천만원 ~ 5억원	3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4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
548	02 (3)	~ 소득세는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. ~	~ 소득세는 6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하고 있다. ~														
553	3번 해설	~ 소득세법은 6~38%의 5단계 초과누진제도를 취하나, ~	~ 소득세법은 6~40%의 6단계 초과누진제도를 취하나, ~														
587	5번 해설	②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%에서 최고 38%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.	②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6%에서 최고 40%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.														
554	5번 문제	③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에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~38%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.	③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시에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6~40%의 6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.														
574	6번 문제	②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(6~38%)이 적용된다.	② 일용근로자의 산출세액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(6~40%)이 적용된다.														
582	02. 표	· 이자소득 -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~38%) · 퇴직소득 : 기본세율(6~38%)	· 이자소득 -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: 기본세율(6~40%) · 퇴직소득 : 기본세율(6~40%)														
590	01 표	기본세율 : 6~38%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	기본세율 : 6~40%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														
601	02	~ 다음과 같이 6~38%의 5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기본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1억 5,000만원 초과</td> <td>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기본세율	~	~	1억 5,000만원 초과	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~ 다음과 같이 6~40%의 6단계 로 이루어져 있다.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기본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1억 5,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 <td>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1억 6,970만원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4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기본세율	~	~	1억 5,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	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5억원 초과	1억 6,970만원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40%
과세표준	기본세율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
1억 5,000만원 초과	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기본세율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
1억 5,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	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1억 6,970만원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40%								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
별책 23	3 표	기본세율 : 6~38%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	기본세율 : 6~40%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														
별책 35	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기본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1억 5,000만원 초과</td> <td>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기본세율	~	~	1억 5,000만원 초과	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과세표준</th> <th>기본세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~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1억 5,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</td> <td>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</td> </tr> <tr> <td>5억원 초과</td> <td>1억 6,970만원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4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과세표준	기본세율	~	~	1억 5,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	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5억원 초과	1억 6,970만원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40%
과세표준	기본세율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
1억 5,000만원 초과	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															
과세표준	기본세율																
~	~																
1억 5,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	3,670만원 + (과세표준 - 1억 5,000만원) × 38%																
5억원 초과	1억 6,970만원 + (과세표준 - 5억원) × 40%																

8.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요건 명확화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16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소득 과세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자소득 과세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,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	<개정이유>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557	(1) 표	(참고)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. (과세제외)	(참고) 보험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으로서 법 소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. (비과세)

9. 사택제공이익 과세제외 대상 확대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이 아닌 종업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주가 아닌 임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택제공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제외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임원이 아닌 종업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주주가 아닌 임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	<개정이유> 상장법인과의 형평성 감안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564	(3) 네모박스	• ㉠ 비출자임원(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임원을 말하며,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고 소액주주인 경우는 포함함)과 ㉡ 직원(임원이 아닌 종업원)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	• ㉠ 비출자임원(주주가 아닌 임원을 말하며,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함)과 ㉡ 직원(임원이 아닌 종업원)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
별책 24	(3)	② ㉠ 비출자임원(해당 회사의 주주가 아닌 임원을 말하며, 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고 소액주주인 경우는 포함함)과 ㉡ 직원(임원이 아닌 종업원)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	② ㉠ 비출자임원(주주가 아닌 임원을 말하며,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함)과 ㉡ 직원(임원이 아닌 종업원)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

10. 출산·입양 세액공제 확대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59조의2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산·입양 세액공제액 ○ 30만원 × 자녀수	<input type="checkbox"/> 출산·입양 세액공제액 ○ 첫째 : 30만원 ○ 둘째 : 50만원 ○ 셋째 이상 : 70만원 × 자녀수	<개정이유> 출산·입양 지원 확대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
592	(2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다자녀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6세 이하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출산·입양</td> <td>· 1명 이상 : 30만원 × 자녀수</td> </tr> </table>	다자녀	~	6세 이하	~	출산·입양	· 1명 이상 : 30만원 × 자녀수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다자녀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6세 이하</td> <td>~</td> </tr> <tr> <td>출산·입양</td> <td> • 첫째 : 30만원 • 둘째 : 50만원 • 셋째 이상 : 70만원 × 자녀수 </td> </tr> </table>	다자녀	~	6세 이하	~	출산·입양	• 첫째 : 30만원 • 둘째 : 50만원 • 셋째 이상 : 70만원 × 자녀수
다자녀	~														
6세 이하	~														
출산·입양	· 1명 이상 : 30만원 × 자녀수														
다자녀	~														
6세 이하	~														
출산·입양	• 첫째 : 30만원 • 둘째 : 50만원 • 셋째 이상 : 70만원 × 자녀수														
별책 37	2 (3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기본공제대상자이고 출산·입양한 자녀수</th> <th>세액공제액</th> </tr> <tr> <td>1명</td> <td>30만원 × 자녀수</td> </tr> </table>	기본공제대상자이고 출산·입양한 자녀수	세액공제액	1명	30만원 × 자녀수	<table border="1"> <tr> <th>기본공제대상자이고 출산·입양한 자녀수</th> <th>세액공제액</th> </tr> <tr> <td>1명</td> <td> • 첫째 : 30만원 • 둘째 : 50만원 • 셋째 이상 : 70만원 × 자녀수 </td> </tr> </table>	기본공제대상자이고 출산·입양한 자녀수	세액공제액	1명	• 첫째 : 30만원 • 둘째 : 50만원 • 셋째 이상 : 70만원 × 자녀수				
기본공제대상자이고 출산·입양한 자녀수	세액공제액														
1명	30만원 × 자녀수														
기본공제대상자이고 출산·입양한 자녀수	세액공제액														
1명	• 첫째 : 30만원 • 둘째 : 50만원 • 셋째 이상 : 70만원 × 자녀수														

11. 혼인세액공제 신설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	-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혼인세액공제액 거주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5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)이고 당해 연도에 혼인을 한 경우 다음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. 다만,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 제외.</p> <p>○ 50만원</p>	<개정이유> 혼인 지원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92	(2) 다음	-	<p>(3) 혼인세액공제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이 5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)이고 당해 연도에 혼인을 한 경우, 다음의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 다만,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는다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r> <td>혼인</td> <td>· 50만원</td> </tr> </table>	혼인	· 5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혼인	· 5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96	04. 표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적용여부</th> <th colspan="2">적용여부</th> </tr> <tr> <th>근로소득이 있는 자</th> <th>근로소득이 없는 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득공제</td> <td>~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세액공제</td> <td>자녀세액공제(~)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연금계좌세액공제(~)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~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적용여부	적용여부		근로소득이 있는 자	근로소득이 없는 자	소득공제	~			세액공제	자녀세액공제(~)	○	○	연금계좌세액공제(~)	○	○	~			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rowspan="2">적용여부</th> <th colspan="2">적용여부</th> </tr> <tr> <th>근로소득이 있는 자</th> <th>근로소득이 없는 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소득공제</td> <td>~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세액공제</td> <td>자녀세액공제(~)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혼인세액공제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연금계좌세액공제(~)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/tr> <tr> <td>~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적용여부	적용여부		근로소득이 있는 자	근로소득이 없는 자	소득공제	~			세액공제	자녀세액공제(~)	○	○	혼인세액공제	○	○	연금계좌세액공제(~)	○	○	~		
구분	적용여부	적용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근로소득이 있는 자	근로소득이 없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공제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액공제	자녀세액공제(~)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금계좌세액공제(~)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적용여부	적용여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근로소득이 있는 자	근로소득이 없는 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소득공제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액공제	자녀세액공제(~)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혼인세액공제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연금계좌세액공제(~)	○	○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~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12.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59조의4	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세액공제율 ○ 15%	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비 세액공제율 ○ 15% (난임시술비는 20%)	<개정이유> 난임시술 지원 확대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
593	(2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세액공제액</td> <td> • 의료비 세액공제액 = (㉠ + ㉡) × 15% ㉠ ~ ㉡ ~ </td> </tr> </table>	세액공제액	• 의료비 세액공제액 = (㉠ + ㉡) × 15% ㉠ ~ ㉡ ~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세액공제액</td> <td> • 의료비 세액공제액 = (㉠ + ㉡) × 15%(난임시술비는 20%) ㉠ ~ ㉡ ~ </td> </tr> </table>	세액공제액	• 의료비 세액공제액 = (㉠ + ㉡) × 15% (난임시술비는 20%) ㉠ ~ ㉡ ~
세액공제액	• 의료비 세액공제액 = (㉠ + ㉡) × 15% ㉠ ~ ㉡ ~						
세액공제액	• 의료비 세액공제액 = (㉠ + ㉡) × 15% (난임시술비는 20%) ㉠ ~ ㉡ ~						
별책 39	(3) ①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료비 세액공제액 =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× 15%</td> </tr> </table>	의료비 세액공제액 =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× 15%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의료비 세액공제액 =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× 15%(*)</td> </tr> </table> <p>(*) 난임시술비는 20%</p>	의료비 세액공제액 =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× 15% (*)		
의료비 세액공제액 =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× 15%							
의료비 세액공제액 =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× 15% (*)							

13.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59조의4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○ - ○ -	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○ 초·중·고등학생 체험학습비(1인당 30만원 한도) ○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	<개정이유> 가계 교육비 부담 및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
593	(3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공제대상</td> <td>~</td> </tr> </table>	공제대상	~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공제대상</td> <td>~ • 초·중·고등학생 체험학습비(1인당 30만원 한도) •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</td> </tr> </table>	공제대상	~ • 초·중·고등학생 체험학습비(1인당 30만원 한도) •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
공제대상	~						
공제대상	~ • 초·중·고등학생 체험학습비(1인당 30만원 한도) •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						
별책 40	(4) ③	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d>~</td> </tr> </table>	~	다음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출액을 공제대상으로 한다. <table border="1"> <tr> <td>~ • 체험학습비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한하며, 1인당 30만원 한도) •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</td> </tr> </table>	~ • 체험학습비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한하며, 1인당 30만원 한도) •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		
~							
~ • 체험학습비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에 한하며, 1인당 30만원 한도) •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							

14.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삭제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59조의4	<input type="checkbox"/>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부양가족 요건 <input type="checkbox"/> (소득금액 요건) 100만원 이하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나이 요건) 20세 이하, 60세 이상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시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(소득금액 요건) 100만원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-	<개정이유> 기부 활성화 지원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
594	(4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공제대상</td> <td>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음)가 지출한 기부금 ~</td> </tr> </table>	공제대상	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음)가 지출한 기부금 ~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공제대상</td> <td>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가 지출한 기부금 ~</td> </tr> </table>	공제대상	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가 지출한 기부금 ~																
공제대상	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음)가 지출한 기부금 ~																						
공제대상	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가 지출한 기부금 ~																						
595	(8)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기본공제 요건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나이 요건</th> <th>소득금액 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부금 세액공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본공제 요건		비고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	기부금 세액공제	○	○	~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기본공제 요건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나이 요건</th> <th>소득금액 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부금 세액공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X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본공제 요건		비고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	기부금 세액공제	X	○	~
구분	기본공제 요건			비고																			
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																					
기부금 세액공제	○	○	~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본공제 요건		비고																				
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																					
기부금 세액공제	X	○	~																				
629	하단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요건</th> <th>~</th> <th>기부금 세액공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나이요건(20세 이하, 60세 이상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tr> <td>소득금액요건(100만원 이하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요건	~	기부금 세액공제	나이요건(20세 이하, 60세 이상)	~	○	소득금액요건(100만원 이하)	~	○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요건</th> <th>~</th> <th>기부금 세액공제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나이요건(20세 이하, 60세 이상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X</td> </tr> <tr> <td>소득금액요건(100만원 이하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~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○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요건	~	기부금 세액공제	나이요건(20세 이하, 60세 이상)	~	X	소득금액요건(100만원 이하)	~	○		
요건	~	기부금 세액공제																					
나이요건(20세 이하, 60세 이상)	~	○																					
소득금액요건(100만원 이하)	~	○																					
요건	~	기부금 세액공제																					
나이요건(20세 이하, 60세 이상)	~	X																					
소득금액요건(100만원 이하)	~	○																					
656	(2) 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5.기부금 > (2)법정기부금 : 금액 없음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,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이 지출한 기부금이므로 기부금공제가 불가능하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5.기부금 > (2)법정기부금 : 200,000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, 기부금공제 적용 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,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생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. 																				
768	5-(2) 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5.기부금(법정기부금) : 금액 없음(*4) (*4)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, 나이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동생이 지출한 기부금이므로 기부금공제가 불가능하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5.기부금(법정기부금) : 200,000 (*4) (*4) 적십자회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, 기부금공제 적용 시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,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동생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하다. 												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												
별책 41	(5)	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(나이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음)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(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)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.																				
별책 44	7 (1)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기본공제 요건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나이 요건</th> <th>소득금액 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부금 세액공제</td> <td>○</td> <td>○</td> <td>~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본공제 요건		비고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	기부금 세액공제	○	○	~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분</th> <th colspan="2">기본공제 요건</th> <th rowspan="2">비고</th> </tr> <tr> <th>나이 요건</th> <th>소득금액 요건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부금 세액공제</td> <td>X</td> <td>○</td> <td>~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기본공제 요건		비고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	기부금 세액공제	X	○	~
구분	기본공제 요건			비고																			
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																					
기부금 세액공제	○	○	~																				
구분	기본공제 요건		비고																				
	나이 요건	소득금액 요건																					
기부금 세액공제	X	○	~																				

15.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	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	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확대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	<개정이유> 서민 주거안정 지원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
594	(6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공제대상</td> <td>㉠ 무주택 세대의 ㉡ 세대주이고 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㉣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</td> </tr> </table>	공제대상	㉠ 무주택 세대의 ㉡ 세대주이고 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㉣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공제대상</td> <td>㉠ 무주택 세대의 ㉡ 세대주이고 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㉣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</td> </tr> </table>	공제대상	㉠ 무주택 세대의 ㉡ 세대주이고 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㉣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
공제대상	㉠ 무주택 세대의 ㉡ 세대주이고 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㉣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						
공제대상	㉠ 무주택 세대의 ㉡ 세대주이고 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㉣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						
별책 44	(2)	<p>(2)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• 세대주 (*1) 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 </td> </tr> </table> <p>(*1) ~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• 세대주 (*1) 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 	<p>(2)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 요건</p> <table border="1"> <tr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• 세대주 (*1) 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 (*2) </td> </tr> </table> <p>(*1) ~ (*2) 해당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(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면) 공제가 가능하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• 세대주 (*1) 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 (*2) 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• 세대주 (*1) 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 포함) 				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무주택 • 세대주 (*1) •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 •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 (*2) 							

16.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조정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								
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 한도금액 ○ 300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제외 대상 ○ 자동차, 중고자동차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 한도금액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: 10px auto;"> <thead> <tr> <th>총급여액</th> <th>한도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7천만원 이하</td> <td>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7천만원 ~ 1.2억원</td> <td>300만원 (2019년 이후 250만원)</td> </tr> <tr> <td>1.2억원 초과</td> <td>20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공제제외 대상 ○ 자동차, 중고자동차 (단,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)	총급여액	한도금액	7천만원 이하	300만원	7천만원 ~ 1.2억원	300만원 (2019년 이후 250만원)	1.2억원 초과	200만원	<개정이유> 과세 형평성 제고
총급여액	한도금액										
7천만원 이하	300만원										
7천만원 ~ 1.2억원	300만원 (2019년 이후 250만원)										
1.2억원 초과	200만원										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
594	(7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공제제외</td> <td>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</td> </tr> </table>	공제제외	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공제제외</td> <td>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(*3)</td> </tr> </table> <p>(*3)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</p>	공제제외	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(*3)				
공제제외	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										
공제제외	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(*3)										
594	(7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득공제액</td> <td>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① 연 300만원, ② 총급여액×20%]</td> </tr> </table>	소득공제액	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① 연 300만원, ② 총급여액×20%]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득공제액</td> <td>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① 연 300만원(*4), ② 총급여액×20%]</td> </tr> </table> <p>(*4) 총급여 1.2억원 초과하는 자는 200만원</p>	소득공제액	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① 연 300만원(*4), ② 총급여액×20%]				
소득공제액	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① 연 300만원, ② 총급여액×20%]										
소득공제액	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① 연 300만원(*4), ② 총급여액×20%]										
648	02 (2)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사용 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용카드</td> <td>· 본인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사용 내역	신용카드	· 본인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사용 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용카드</td> <td>· 본인 신규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사용 내역	신용카드	· 본인 신규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
구분	사용 내역										
신용카드	· 본인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										
구분	사용 내역										
신용카드	· 본인 신규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										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								
649	02 (2) 해설	· ~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분, 자동차 구입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하다.	· ~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분, 신규 자동차 구입 사용분은 전액 공제가 불가능하다.								
677	5-(2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배우자 최민석 (만53세) (630210-1458369)</td> <td>신용카드 사용 (중고차량 구입 4,000,000원 포함)</td> <td>13,000,000</td> </tr> </table>	배우자 최민석 (만53세) (630210-1458369)	신용카드 사용 (중고 차량 구입 4,000,000원 포함)	13,000,000	<table border="1"> <tr> <td>배우자 최민석 (만53세) (630210-1458369)</td> <td>신용카드 사용 (신규차량 구입 4,000,000원 포함)</td> <td>13,000,000</td> </tr> </table>	배우자 최민석 (만53세) (630210-1458369)	신용카드 사용 (신규 차량 구입 4,000,000원 포함)	13,000,000		
배우자 최민석 (만53세) (630210-1458369)	신용카드 사용 (중고 차량 구입 4,000,000원 포함)	13,000,000									
배우자 최민석 (만53세) (630210-1458369)	신용카드 사용 (신규 차량 구입 4,000,000원 포함)	13,000,000									
712	5-(2) 표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사용 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용카드</td> <td>· 본인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사용 내역	신용카드	· 본인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사용 내역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신용카드</td> <td>· 본인 신규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사용 내역	신용카드	· 본인 신규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
구분	사용 내역										
신용카드	· 본인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										
구분	사용 내역										
신용카드	· 본인 신규 자동차구입 현금영수증사용액 15,000,000원										
741	5-(2) 해설	· 42.신용카드 등 사용액(신용카드) : 9,000,000(*1) (*1) 중고차량 구입비 및 취득세는 공제가 안된다.	· 42.신용카드 등 사용액(신용카드) : 9,000,000(*1) (*1) 신규 차량 구입비 및 취득세는 공제가 안된다.								
759	5-(2) 해설	(*1) ~ (단,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분, 자동차 구입 사용분은 공제 불가하다)	(*1) ~ (단, 신용카드 등의 해외사용분, 신규 자동차 구입 사용분은 전액 공제 불가하다)								
별책 34	(3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</td> <td>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</td> </tr> </table>	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	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</td> <td>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(*3)</td> </tr> </table> <p>(*3)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%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</p>	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	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(*3)				
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	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										
인정되지 않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	·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 (주택, 자동차, 중고자동차 등)(*3)										
별책 34	(3) 표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득공제액</td> <td>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㉠ 연 300만원, ㉡ 총급여액×20%]</td> </tr> </table>	소득공제액	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㉠ 연 300만원, ㉡ 총급여액×20%]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소득공제액</td> <td>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㉠ 연 300만원 (*4), ㉡ 총급여액×20%]</td> </tr> </table> <p>(*4) 총급여 1.2억원 초과하는 자는 200만원</p>	소득공제액	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㉠ 연 300만원 (*4), ㉡ 총급여액×20%]				
소득공제액	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㉠ 연 300만원, ㉡ 총급여액×20%]										
소득공제액	② 기본공제한도금액 : Min [㉠ 연 300만원 (*4), ㉡ 총급여액×20%]										

17.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액 한도 조정

▶ 세법개정안

해당 법령	개정 전	개정 후	비고
소득세법 제59조의3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시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○ 400만원	<input type="checkbox"/> 연금계좌 세액공제 적용 시 연금저축 납입액 한도 ○ 400만원 (단, 총급여 1.2억원 초과하는 자는 300만원)	<개정이유> 과세 형평성 제고

▶ 교재 수정사항

페이지	위치	수정 전	수정 후
별책 37	3 (2)	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= Min [①, ②] ① Min [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, ㉡ 연 400만원] +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연 700만원	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= Min [①, ②] ① Min [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, ㉡ 연 400만원(*1)] +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② 연 700만원 (*1) 단, 총급여 1.2억원 초과하는 자는 300만원